

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1. 개정이유

「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(23.8.29)」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신생아 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모집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신생아 가구 정의를 신설하고, 신혼부부 유형을 신혼·신생아 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함 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, 제20조)
- 나. 입주자 모집 시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, 입주 순위를 조정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함 (안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별표3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주거복지지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- 팩스 : 044-201-5663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(전화 044-201-4533, 45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